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여권 발급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(안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4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